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0.7.12> (앞 면)

제 호

신 분 증 명 서

소 속:

직 급:

성 명:

생년월일(남·여):

사 진
(2cm×2.5cm)

위 사람은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직인

95mm×65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뒷 면)

관 련 법 조 문

1. 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: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장, 고령자인재은행,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,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, 장부,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